

고양시 전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.

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, 2019년 6월1일부터 자전거보험계약을 갱신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.

- 보 험 명 : 고양시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보험
- 보 험 기간 : 2019. 6. 1. ~ 2020.5.31.(1년간) 청구시효:3년
- 보험계약자 : 고양시청
- 피 보험자 :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양시민
- 수 익 자 : 피보험자 본인(사망시 법정상속인)
- 보 험 사 : KB손해보험(접수 및 문의처 : 전화 02)6900 - 5103 , 팩스 0505-137-0051)
- ※ 별도 가입절차 없음. 주민등록기준. 사고지는 국내 어디서나 단, 국외불가
- 보장 내용

| 구분 | 보 장 내 용 | 보장금액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자전거사고 사망 |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| 1,000만원 (15세미만자 제외) |
|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|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자전거 교통사고로 3%-100%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| 1,000만원 한도 |
|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| 고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 일에 따라 지급 (최초 진단기준,1회에 한해 지급) ※ 4주 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 지급 | 진단 4주 이상 20만원 진단 5주 이상 30만원 진단 6주 이상 40만원 진단 7주 이상 50만원 진단 8주 이상 60만원 |
| 자전거사고 벌 금 | 고양시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| 2,000만원 한도 (14세미만자 제외) |
|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|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,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| 200만원 한도 (14세미만자 제외) |
|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|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(가족제외, 동승자 포함)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| 3,000만원 한도 (14세미만자 제외) |
| 자전거사고 배상 책임 (대인배상) |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| 1인당 300만원 한도 (자기부담 20만원) |

□ 자전거 사고란?

- 자전거를 직접 운전(탑승)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
-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
-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

□ 자전거란?

-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,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
- ※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
(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광범위하게 해석)

□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

-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, 자해,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

□ 보험금 청구시 첨부서류 및 문의처

- 공통서류
 - 보험금청구서(보험사 소정양식, 사고장소 필히 기재)
 - 주민등록등(초)본 - 피보험자 명의의 통장사본
 - 피보험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 - 초진진료차트(자전거 사고내용 필히 기재)
 - 교통사고 관련 서류(해당사항 시)
- 상해위로금(팩스 또는 우편접수)
 - 공통서류
 - 4주이상 진단서
 - 입(퇴)원확인서(6일이상 입원한 경우)
- 사망, 후유장해, 벌금, 변호사선임비용, 교통사고처리지원금 : 별도문의
- 보험금 청구 문의처
 - KB손해보험(접수 및 문의처)
 - 전화 02)6900 - 5103
 - 팩스 0505-137-0051

자전거보험 Q & A

Q : 자전거보험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A :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무조건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.

Q : 고양시민이 고양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나요?

A :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(국외 제외)

Q : 다른 지역에서 전입 왔습니다.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A : 사고일을 기준(사고발생 시)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.

Q :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?

A :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

Q :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시 벌금, 변호사 선임비용,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?

A :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Q :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?

A : 사고가 발생 한 후 의사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단,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애는 그 즉시 장애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, 신체 부위별 상해정도에 따라 일정시간(최소6개월이상)이 경과 된 후에 장애판정을 받습니다.

Q :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난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?

A : 2018.3.22.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에 따라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동일하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률에 따라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

- ①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역으로 움직일 것(PAS방식)
- ② 최고 속도가 25km/H미만일 것
- ③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중량이 30kg 미만 일 것